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6942 발의년월일 : 2024. 04. 12.

발 의 의 원 : 김태우, 김정옥,

박소영, 박종필,

이영애, 이재숙,

이재화, 이태손,

황순자 의원(9명)

1. 제안(개정) 이유

- 가.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명 변경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.
- 나. 「국민건강증진법」,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규정(유치원, 학교, 주유소 등)을 정비하며,
- 다.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대구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타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'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'로 제명 변경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, 제6조)
- 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상 금연구역 지정 해제(안 제4조)
- 다.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(안 제11조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보건의료기본법」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등

나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"를 "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"로 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"금연환경"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, 인지적 환경을 의미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"을 "해당구역"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(금연구역 홍보 및 예산지원)"을 "(금연환경의 조성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시행령"을 "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"시행령" 을 "영"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업무협의) 시장은 관할 자치구·군의 금연구역 지정, 표지판 설치, 과태료 부과 등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업무의 현 황을 파악하고,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. 제11조제1항 중 "10만원 이하"를 "5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법시행령"을 "영"으로 한다. 제1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 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, 제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 일부터 시행하며,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	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
	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"금연환경"이란 시민의 금연의
	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
	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, 인
	지적 환경을 의미한다.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금연에	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의
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	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
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	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
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	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
책을 마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	<u>여야 한다.</u>
제4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시장	제4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
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"법"	
이라 한다) 제9조제7항에 따라 시	
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	
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	
정할 수 있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	<u> </u>
률」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	

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

8. (생략)

9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

10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5조(흡연실의 설치) ① 제4조에 제5조(흡연실의 설치) ① -----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 유자 ·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실을 설 치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6조(금연구역 홍보 및 예산지원) 제6조(금연환경의 조성 등) ① 시장 ① 시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의 피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 ③ 금연지도원의 자격, 직무범위 및 교육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시행 령에 따른다.
-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

8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10. (현행과 같음)

(2)	\sim	(4)	(혂행과	간을)
(4)		(+)	(1 7 7 7	$\mathcal{T} = \mathcal{T} \mathcal{T}$

----- 해당구

② (현행과 같음)

은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금 해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를 실시 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 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금연지도원) ①·② (생 략) | 제8조(금연지도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			
「국민건경	<u> </u>	시행령」	(이하
"영"이라	한다)		

하여야 한다.

- 1. 제3항에 따라 <u>시행령</u>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2. · 3. (생략)
- 제9조(업무협의) 구청장·군수는 금 연구역 지정, 표지판 설치,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중요한 사항을 조 례 등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과태료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 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•
1
2.・3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업무협의) 시장은 관할 자치
구・군의 금연구역 지정, 표지판
설치, 과태료 부과 등 금연환경 조
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
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, 협력체
계를 구축하여야한다.
제11조(과태료) ①
<u>5만원</u>
·.
②
여
<u><삭 제></u>

관계 법 령

□ 보건의료기본법

- 제10조(건강권 등)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- ② 모든 국민은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
□ 국민건강증진법

- 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가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·홍보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삭제 <2011. 6. 7.>
 - ④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 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 구를 표기하여야 한다.
 - ⑤ 삭제 〈2002. 1. 19.〉
 -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 ⑤ (생략)

- 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- 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(일 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- 3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
[시행일: 2024. 8. 17.] 제9조

□ 위험물안전관리법

- 제19조의2(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)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·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·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. 30.]

[시행일: 2024. 7. 31.] 제19조의2

제3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 · 보존하지 아니한 자

7의2.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
7의3.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

7의4.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8. ~ 9.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이 부과·징수한다.

[시행일: 2024. 7. 31.] 제39조